

금융기관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7월 15일 발표는 법률 개정 추진이고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은 별개다

금융위원회·법무부의 7월 15일 발표와 8월 6일 후속안내, 8월 22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을 대조해 발표·현행법·과거 사건을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22	연번	2026_53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조치의 핵심을 추심의 강도보다 채무자가 알지 못한 사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소멸시효가 다시 길어질 수 있는 절차를 고치는 데서 찾는다. 다만 발표와 시행은 다르다. 법률 개정의 적용일·경과조치가 확정되기 전에는 폐지가 끝났다고 쓰면 안 된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22일 현재 현행법 제20조의2는 남아 있고, 과거 확정 사건의 처리도 발표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금융기관에 허용된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 발표	2026년 7월 15일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
현행 조문	소송촉진법 제20조의2	8월 22일 현재 존속
적용 기관	은행 등 26개 기관	정부 발표 기준
이의 기간	송달 뒤 2주	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 뒤 시효	10년	민법 제165조 제2항
후속 일정	8월 모범규준 · 9월 세칙	법률 개정과 별도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소송촉진법 제20조의2는 금융기관 등이 업무로 취득한 대여금·구상금 등의 채권에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한 대상이 이 조문입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 효력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게시를 읽었는지를 효력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특례에서는 청구원인 소명자료를 내면 공시송달 방식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면 채권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고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20조의2 제5항은 공시송달 때문에 이의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무자에게 민사소송법상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존재를 알아야 이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보격차가 남습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과 별도로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과 개인 연체채권 관리 세칙을 고쳐 기계적 연장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내부 심사기준의 개선은 법률상 특례의 폐지와 같은 일이 아닙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예를 들어 상사채권의 5년 시효가 1년 남았을 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단순화한 법률구조상 확정 시점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1년이 10년으로 바뀌는 효과입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중단·완성 여부는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소 변경 등으로 서류를 받지 못한 채 금융기관의 지급명령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채무자입니다. 폐지 법안이 앞으로 접수될 사건에만 적용되면 이미 확정된 명령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한 잔여시효	1년	상사채권 단순 예시
지급명령 확정 뒤	10년	민법 제165조 제2항
효과	+9년	사건별 기산점은 다름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법률 개정 시점

8월 22일 현재 정부 발표는 개정 추진이며 공포일·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2 · 경과조치

개정안이 시행 전 접수사건,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과 진행 중인 시효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정 부칙이 필요합니다.

03 · 과거 사건의 발견

채무자가 자기 이름의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쉽게 조회하고 안내받을 통합 절차는 발표문에 없습니다.

04 · 내규의 공개 범위

8월 모범규준과 9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세칙이 회사별 시효연장 판단과 실적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와 법원 사건조회에서 현재 채권자, 지급명령·공시송달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뒤늦게 확정 지급명령을 알았다면 송달·주소·인지일 자료를 보존하고 추후보완 가능 기간을 즉시 법률지원 창구에 문의합니다. • 채무조정이나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대상회사	• 지급명령 신청 전 주소 확인과 시효연장 필요성, 상환능력·채무조정 가능성을 사건별로 기록하고 자동 연장을 중단합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시효연장 사실, 사건번호와 이의·조정 창구를 도달 가능한 수단으로 안내합니다.
당국	• 개정안 부칙에 시행 전 접수·이미 확정된 사건의 처리와 채무자 통지·조회 절차를 명시합니다. •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연장 실적과 사유, 채무조정 연결 결과를 같은 정의로 공시합니다.

갈림길

폐지가 과거 확정사건까지 닿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의 적용례·경과조치와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별도 구제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B
과거 사건의 통지·재검토 포함 채무자가 사건을 발견하고 추후보완·채무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통로가 생기면 절차적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향후 신청만 제한 새 지급명령의 공시송달은 막히지만 이미 확정된 명령과 다시 진행 중인 시효는 현행 구제절차 안에 남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국회 의안정보의 소송촉진법 개정안과 부칙, 8월 모범규준·9월 세척 및 소멸시효 완성실적 공시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빗 조정을 요청할 권리는 언제한 뒤에 생긴다 ↗](#)

[제도와 규칙 채무조정 제도 개관 ↗](#)

[피해구제 불법추심 대응 ↗](#)

피해구제 빛을 갈 수 없을 때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7건

01	1차 · 2026년 7월 15일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법률 개정 추진 발표 금융위원회·법무부 공식 보도참고자료 원문 열기 ↗
02	1차 · 현재 은행 등 26개 금융·공공기관에 특례 적용 같은 공식 발표 원문 열기 ↗
03	1차 · 8월 모범규준 개정, 9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세척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6일 후속 안내 원문 열기 ↗
04	1차 · 8월 22일 현재 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존속과 추후보완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원문 열기 ↗
05	1차 · 지급명령 송달 뒤 2주 이의기간과 이의 없는 명령의 확정판결 동일 효력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원문 열기 ↗
06	1차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5조 제2항 원문 열기 ↗
07	파생 · 잔여시효 1년 가정에서 확정 뒤 10년이면 단순 차이 9년 10년-1년=9년. 구체적 기산점·중단 여부는 사건별로 다름

추적 예정	소송촉진법 개정안의 시행일·부칙과 8월 모범규준, 9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세척, 금융기관별 소멸 시효 완성실적 공시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PDF의 제목을 기준일 상태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특례가 폐지됐다’가 아니라 ‘폐지 법률 개정 이 추진 중’임을 분명히 하고, 현행 제20조의2와 과거 확정사건의 효력이 남는다는 점을 전면 배 치했습니다. 사이트 공개 순서를 다시 대조해 연번을 제53호로 바로잡았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의·추후보 완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건기록과 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